

# 핵심만 쏙쏙! 기업법무실무

## 공정거래법

변호사 / 공인회계사 이 은 종

# Contents

- 1 공정거래법의 기본 구조**
- 2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 3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 4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금지**
- 5 벌칙**

# Contents

## 1 공정거래법의 기본 구조

# 1. 공정거래법의 기본 구조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구조

- 제1장 총칙
-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
- 제4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 제6장 사업자단체
- 제7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 제8장 (삭제)

- 제9장 전담기구
- 제9장의2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
-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 제10장의2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등
- 제11장 손해배상
- 제12장 적용제외
- 제13장 보칙
- 제14장 벌칙

# Contents

## 2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1. 시장지배적 사업자

2. 남용행위

3. 시정조치 및 과징금

# 2.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 1. 시장지배적사업자

### 정의

#### 공정거래법 제2조(정의)

7. “시장지배적사업자”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2조 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
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

# 2.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 2. 남용행위

### ■ 공정거래법 제3조의2

####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 ①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남용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가격”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 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② 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 2.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 2. 남용행위

### 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시행령 제5조)

#### 1. 부당한 가격 결정 등

- 정당한 이유없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동종 또는 유사업종의 통상적인 수준의 것에 한한다)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경우

#### 2. 상품판매 또는 용역제공의 부당한 조절

- 1) 정당한 이유없이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경우
- 2) 정당한 이유없이 유통단계에서 공급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경우

# 2.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 2. 남용행위

### 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시행령 제5조)

#### 3. 사업활동에 대한 부당한 방해

-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경우
  - 1)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 2) 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면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인력을 채용하는 행위
  - 3)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행위

####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에 대한 부당한 방해

-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을 어렵게 하는 경우
  - 1)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하는 유통사업자와 배타적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2) 정당한 이유없이 기존사업자의 계속적인 사업활동에 필요한 권리등을 매입하는 행위
  - 3) 정당한 이유없이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행위

# 2.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 2. 남용행위

### 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시행령 제5조)

#### 5.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부당한 거래

- 1)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낮은 대가로 공급하거나 높은 대가로 구입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2)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에서 상세한 기준 규정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5-15호)

# 2.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 3. 시정조치 및 과징금

### ■ 시정조치

#### 공정거래법 제5조(시정조치)

-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하여 가격의 인하,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2.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 3. 시정조치 및 과징금

### 과징금

#### 공정거래법 제6조(과징금)

-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0조(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

- 1)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중단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 2) 위반기간 또는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제1항에 따른 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 3)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산정자료가 소멸 또는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 2.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 3. 시정조치 및 과징금

### 과징금 부과기준

-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2에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음
-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부과여부를 결정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함

- 1)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크게 저해하는 경우
- 2)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 3) 위반행위에 의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
- 4) 그 밖에 가목에서 다목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Contents

## **3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1. 부당한 공동행위

2. 시정조치 및 과징금

3.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 3.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 1.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 부당한 공동행위

####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 3)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3.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 1.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 부당한 공동행위

####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 2)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등을 설립하는 행위
- 3)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 4)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 3.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 1.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 부당한 공동행위

#### 예시

갑, 을 및 다른 10개 건설회사 입찰 담당자들이 사전에 모여 공공건물 신축공사입찰에서 을이 낙찰되도록 하기 위해 을은 100억 원 미만의 금액으로 입찰하고 을을 제외한 다른 회사들은 모두 100억 원 이상의 가격으로 입찰하기로 약속하였다. 갑회사 입찰 담당자는 다른 사업자들과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내심으로는 100억 원보다 낮은 80억 원으로 입찰하여 낙찰을 받을 의사를 가졌으나 겉으로는 위와 같이 합의하였다. 그후 합의와 달리 갑은 실제 80억 원으로 입찰하여 낙찰을 받았다.

이와 같이 갑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합의를 한 후 실제 입찰에서 이 합의를 실행하지 않았다고 해도 위 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성립된다.

# 3.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 1.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 부당한 공동행위

####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② 제1항의 규정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산업합리화
- 2) 연구·기술개발
- 3) 불황의 극복
- 4) 산업구조의 조정
- 5) 거래조건의 합리화
- 6)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④ 제1항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등은 사업자간에 있어서는 이를 무효로 한다.

⑤ 2 이상의 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분야 또는 상품·용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양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 3.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 1.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 부당한 공동행위

#### 추정을 보강하기 위한 정황증거(공동행위심사기준,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235호)

20이상의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이들 사업자간의 합의에 관한 직접적 증거가 없을 지라도 해당 거래분야 또는 상품·용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 양태 등 관련 정황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아래에 제시하는 사항들은 추정을 보강하기 위한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

(가) 직·간접적인 의사연락이나 정보교환 등의 증거가 있는 경우

- 해당 사업자간 가격인상, 산출량 감축 등 비망록 기입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 모임을 갖거나 연락 등을 하고 그 이후 행동이 통일된 경우
- 특정 기업의 가격, 산출량 등 결정을 위한 내부 업무보고 자료에 다른 경쟁기업의 가격, 산출량 등에 대한 향후 계획 등 일반적으로 입수할 수 없는 비공개 자료가 포함된 경우
- 특정기업이 가격인상 또는 산출량 감축 의도를 밝히고 다른 경쟁기업들의 반응을 주시한 후 그 반응에 따라 가격인상 또는 산출량 감축을 단행한 경우

# 3.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 1.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 부당한 공동행위

#### 추정을 보강하기 위한 정황증거(공동행위심사기준,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235호)

(나) 공동으로 수행되어야만 당해 사업자들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수행되었다면 당해 사업자 각각의 이익에 반하리라고 인정되는 경우

- 원가상승 요인도 없고 공급과잉 또는 수요가 감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동일하게 인상하는 경우
- 재고가 누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동시에 인상된 경우

(다) 당해 사업자들의 행위의 일치를 시장상황의 결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

- 수요공급조건의 변동, 원재료 공급원의 차이, 공급자와 수요자의 지리적 위치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동일하고 경직되어 있는 경우
- 원재료 구입가격, 제조과정, 임금인상률, 어음할인금리 등이 달라 제조원가가 각각 다른데도 가격변동 폭이 동일한 경우
- 시장상황에 비추어 보아 공동행위가 없이는 단기간에 높은 가격이 형성될 수 없는 경우

# 3.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 1.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 ■ 부당한 공동행위

추정을 보강하기 위한 정황증거(공동행위심사기준,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235호)

(라) 당해 산업구조상 합의가 없이는 행위의 일치가 어려운 경우

- 제품차별화가 상당히 이루어진 경우에도 개별 사업자들의 가격이 일치하는 경우
- 거래의 빈도가 낮은 시장, 수요자가 전문지식을 갖춘 시장 등 공급자의 행위 일치가 어려운 여건에서 행위의 일치가 이루어진 경우

# 3.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 1.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 공공부문 입찰 관련

#### 공정거래법 제19조의2(공공부문 입찰 관련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과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입찰공고를 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때에는 입찰 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입찰 관련 정보의 범위 및 제출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 2. 시정조치 및 과징금

### ■ 시정조치

#### 공정거래법 제21조(시정조치)

-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3.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 2. 시정조치 및 과징금

### 과징금

#### 공정거래법 제22조(과징금)

-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2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3.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 3.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 공정거래법 제22조의2(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1조(시정조치)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제22조(과징금)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제71조(고발)에 따른 고발을 면제할 수 있다.
  -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
  - 2)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
-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자가 그 감경 또는 면제받은 날 이후에 새롭게 제19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를 하지 아니한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 및 그 소속 공무원은 소송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에 협조한 자의 신원·제보내용 등 자진신고나 제보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사건 처리와 관계없는 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경 또는 면제되는 자의 범위와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정도 등과 제3항에 따른 정보 및 자료의 제공·누설 금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 4. 손해배상책임

### ■ 손해배상책임

#### 공정거래법 제56조(손해배상책임)

-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23조의3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 4. 손해배상책임

### ■ 손해배상책임

#### 공정거래법 제56조(손해배상책임)

④ 법원은 제3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2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그 배상액은 해당 사업자가 제19조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 2)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
- 3) 위법행위로 인하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 6) 사업자의 재산상태
- 7)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⑤ 제2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자진신고자)가 제3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제19조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법」 제760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을 진다.

# 3.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 4. 손해배상책임

### ■ 손해액의 인정

#### 공정거래법 제57조(손해액의 인정)

-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 Contents

## 4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금지

1. 불공정 거래행위
2. 시정조치 및 과징금
3. 손해액

# 4.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금지

## 1.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 불공정거래행위

####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 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6)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 7) 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4.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금지

## 1.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 불공정거래행위

####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②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항제7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
- ⑤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공정경쟁규약”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 ⑥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 제3호를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 4.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금지

## 1.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시행령 별표1의2)

#### 1. 거래거절

##### 가. 공동의 거래거절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 나. 기타의 거래거절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 2. 차별적 취급

##### 가. 가격차별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

##### 나. 거래조건차별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

##### 다.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가격·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 라. 집단적 차별

집단으로 특정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 4.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금지

## 1.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시행령 별표1의2)

#### 3. 경쟁사업자 배제

##### 가. 부당염매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하여 공급하거나 기타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대가로 공급함으로써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 나. 부당고가매입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높은 대가로 구입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 4. 부당한 고객유인

##### 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 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광고 외의 방법으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이 실제보다 또는 자기의 것보다 현저히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 다.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경쟁사업자와 그 고객의 거래에 대하여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의 방법으로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 4.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금지

## 1.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시행령 별표1의2)

#### 5. 거래강제

##### 가. 끼워팔기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 나. 사원판매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다. 기타의 거래강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거래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가. 구입강제 :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나. 이익제공강요 :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물품·용역 기타의 경제상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판매목표강제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라. 불이익제공 : 상기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경영간섭 :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 4.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금지

## 1.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시행령 별표1의2)

#### 7. 구속조건부거래

##### 가. 배타조건부거래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 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8. 사업활동 방해

##### 가. 기술의 부당이용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상당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 나.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상당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 다. 거래처 이전 방해

다른 사업자의 거래처 이전을 부당하게 방해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 라. 기타의 사업활동방해

상기 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 4.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금지

## 1.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시행령 별표1의2)

#### 9. 부당한 지원행위

##### 가. 부당한 자금지원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 등 자금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 나.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 자산 또는 상품·용역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 4.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금지

## 1.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시행령 별표1의2)

#### 9. 부당한 지원행위

##### 다.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 등

- 1)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微微)한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행위
- 2)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면서 그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거래상 역할에 비하여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 4.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금지

## 2. 보복조치의 금지

### ■ 보복조치

#### 공정거래법 제23조의3(보복조치의 금지)

사업자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그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거래의 정지 또는 물량의 축소,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제48조의6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 2) 제49조제2항에 따른 신고
- 3) 제50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

# 4.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금지

## 3. 시정조치 및 과징금

### ■ 시정조치

#### 공정거래법 제24조(시정조치)

-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또는 제2항,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또는 제23조의3(보복조치의 금지)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 및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의 경우 해당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를 의미한다]에 대하여 해당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해당 보복조치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4.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금지

## 3. 시정조치 및 과징금

### 과징금

#### 공정거래법 제24조의2(과징금)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23조의3(보복조치의 금지)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7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4.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금지

## 4. 손해배상책임

### ■ 손해배상책임

#### 공정거래법 제56조(손해배상책임)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제19조, 제23조의3(보복조치의 금지)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금지

## 4. 손해배상책임

### ■ 손해배상책임

#### 공정거래법 제56조(손해배상책임)

④ 법원은 제3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생략)

-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 2)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
- 3) 위법행위로 인하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 6) 사업자의 재산상태
- 7)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 4.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금지

## 4. 손해배상책임

### ■ 손해액의 인정

#### 공정거래법 제57조(손해액의 인정)

-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 Contents

## 5 벌칙

--	--

# 5. 벌칙

## 주요 벌칙 규정

### 공정거래법 제6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

(중간 생략)

9.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행하도록 한 자

9의2.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9의3. 제23조의3(보복조치의 금지)을 위반한 자

(중간 생략)

11.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5. 벌칙

## 주요 벌칙 규정

### 공정거래법 제67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
  6. 제5조(是正措置), 제16조(시정조치 등)제1항, 제21조(是正措置), 제24조(是正措置), 제27조(是正措置), 제30조(재판매가격유지계약의 수정) 또는 제31조(시정조치)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금지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7. 제14조제4항에 따른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8.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9.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10.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조·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5. 벌칙

## ■ 주요 벌칙 규정

### 공정거래법 제70조(양벌규정)

- 법인(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벌칙

## 주요 벌칙 규정

### 공정거래법 제71조(고발)

- ① 제66조(罰則) 및 제67조(罰則)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6조 및 제67조의 죄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 ③ 검찰총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은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고발요청이 있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하지 못한다.

# 핵심만 쏙쏙! 기업법무실무

## 공정거래법

감사합니다